

제3회 원규심의위원회

2016. 5. 26.(목)

# 심 의 안 건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순서

---

1.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
2.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안) .....3

##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1. 의결주문

징계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3.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위원회의 부당하게 가벼운 의결에 대해 원장이 견제 장치 마련

### 4. 시 행 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 설 &gt;</p>	<p>제15조의1(징계 등의 절차) 원장은 <u>징계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p>

#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안)

## 1. 의결주문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내부감사규칙 제3조 제5항의 청렴업무에 외부인을 임명함에 있어 자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옴부즈만 구성 : 1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옴부즈만 직무활동
  - 연구원이 시행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함으로써 부패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

## 4. 시 행 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안)

제 정 2016. 5.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 내부감사규칙 제3조 제5항의 외부 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연구원이 시행 중인 옴부즈만 대상사업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옴부즈만 대상사업”이란 기준 제7조에 따른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회의)** ① 옴부즈만은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 활동중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옴부즈만 자격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2. 공기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3.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연임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위촉시 기준 제13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옴부즈만의 해촉으로 공석시 옴부즈만 보궐위촉하고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후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옴부즈만의 직무활동)** ①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목표는 옴부즈만 대상사업의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둔다.

②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 감시평가

가. 다음 사업중 옴부즈만 선정 사업(서울시 옴부즈만 대상사업 제외)

- 1) 공사 : 5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
- 2) 용역 : 2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3) 물품 : 1억원 이상 2억 미만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옴부즈만 선정사업

다.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2. 옴부즈만 대상사업 계약관련 외부위원 선정, 심사, 평가, 협상 등 입회 감시
3. 옴부즈만 대상사업 계약관련 민원사항 검토 의견 표명
4. 옴부즈만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참여
5.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 건의

7. 그 밖의 부패방지 제도 등에 대한 시행 및 개선사항 건의

③옴부즈만은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요구 할 수 있으며 감시평가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의견표명, 개선, 권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계약부서 등)은 옴부즈만 직무활동과 관련 옴부즈만에게 입회 등 감시평가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활동

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서울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옴부즈만 활동은 매 분기당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건의 등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9조(옴부즈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사후조치 또는 합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옴부즈만협의회는 옴부즈만 및 소관 사업 관련 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협의회 개최시 별도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옴부즈만이 겸임한다.

**제10조(제척)**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감사는 당해 사업에 대해 해당 옴부즈만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2조(옴부즈만 의견표명 등)** ①옴부즈만은 감시평가활동 결과 의견표명, 시정, 개선,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제시한다.

②감사는 각 분기별 등 옴부즈만 활동후 권고사항 등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 등에 그 처리를 요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요구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해당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엄수)**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옴부즈만은 위촉시 제3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윤리서약서를 제출 한다.

**제14조(수당)** 옴부즈만 직무활동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확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표 옴부즈만의 요구(문서) 등에 따른 당초 예산범위를 초과한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시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감사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제 정)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음부즈만 건의서

건 명				
음부즈만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해당부서				
내용				
처리의견				
상기 사항을 「서울연구원 음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연구원 원장 귀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 각 서

본인은 서울연구원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 시 (해촉이후 포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옴부즈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옴부즈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울연구원 옴부즈만 성명 : (서명)

서울연구원 원장 귀하